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6. 25 선고 2024가단957 판결 [건물명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25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피고들은 공동하여 92,53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3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4. 2. 3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,4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최지경

별지